

# 「2023년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기대드림」 안내서

##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기대드림’

2) 사업기간 : 상시

3) 사업목적

: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주배경가정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 극복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대상 : 위기 이주배경가정

-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배경가정 중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

-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 가정

5) 신청방법(기관을 통한 신청)

-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병원(사회사업실이 있는 상급병원), 학교, 교회 등

- 개별 신청 불가

- 기대플러스를 통한 신청접수 <http://hope.kfhi.or.kr>

6) 사업 진행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심의 ▶ 최종선정 안내

▶ 지원금 송금(신청기관 통장으로) ▶ 결과보고서 제출(지원 후 최대 6개월 이내)

7)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치료 중복 최대 500만원 지원

8) 사업문의 : 02-2085-8113 (평일 오전 8시 ~ 오후 7시)

## 2. 사업상세

1) 지원대상자

(1) 일반기준

- 위기 이주배경가정 중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가정 우선

-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 가정

(2)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지원기준	소득	재산	금융재산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18,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000만원 이하 농어촌 10,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 참조 : e-나라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소득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건강보험료	73,661	122,521	157,214	191,464	224,423	256,232

\* 위 지원 기준이 아님에도 대상자로 판단되어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내부 심사 진행

2) 지원내용세부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긴급 지원	생계비	위기(실직, 질병, 화재, 사망 등)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일정 생활비 지원	각 최대 300만원 (의료비만 500만원), 중복 최대 800만원
	의료비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 및 치료가 어렵고, 받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커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정에 수술, 치료, 간병비 지원	
	주거비	위기로 인해 임대료, 관리비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주거비 지원	
	보육 및 교육비	위기로 인해 자녀 보육비 지출이 어렵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보육비, 교육비 지원	
	기타	기관에서 위기라고 판단되는 가정에 필요에 따른 지원	
선별 지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받는 가정 중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0회 기준)

- \* 지원신청 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내부 심의하여 금액 산정
- \*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음
- \* 신청기관 통장으로 송금

3) 신청방법세부

(1) 기대플러스 페이지 통한 신청

- <http://hope.kfhi.or.kr> 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기관 회원가입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고유번호증, 통장정보 필수 기재

(2)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원칙

- 지원 항목별 증빙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탈락 \*기입 공란 시, 서류 미비로 간주함
-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지원 불가**
- 지원받은 대상자 가정의 경우, 중복 신청/지원 불가 (\*1가구당 1회 지원 원칙)

(3) 제출서류 \* 신청 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사진 첨부 제출

구분	공통서류(필수)	추가서류(각 지원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기대드림 신청서(양식)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포함)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제외 (전체 가구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내역)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증명서(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증명서(해당자) <input type="checkbox"/> 화재증명원(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의료비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체납확인서(주거비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관리비/공공요금 체납고지서(생계비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는 서류 및 사진 자료(기타 지원금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심리치료 증빙 : 담당자 의견서, 상담기록, 치료필요 소견서 등 (심리치료 신청자, 택1)

- 제출 시, 서류 제목 : 문서명 양식 아래와 같이 통일  
 [기대드림] 기관명\_대상자명\_신청서(제출서류명)  
 예) [기대드림] 희망친구교회\_김기대\_신청서, [기대드림] 흥길동복지관\_김희망\_수급자증명서 등

4) 지원금 집행 관리

(1) 지원금 집행 원칙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금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청 후 사용

3. 결과보고 내용 및 방법

1) 제출기간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집행 후 최대 6개월 이내 및 사례관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2)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1부
- 대상자 만족도 조사(사전/사후) 1부
- 지출 증빙자료(하단표 참고)

3) 지출 증빙자료(참고용) : 지원금 사용 후 결과보고 시, 아래 적격증빙 자료 기준에 맞게 자료 제출

적격증빙자료	내용
이체 확인증	지원금 입금 내역, 기관→가정으로 송금 시 이체확인증 첨부
계산서(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지원금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함” 적격증빙임
현금영수증	현금지출 지양
고지서	고지서 상 수납필 도장 날인 인정
수령증	지원금 현금 지급 시 (생활비 등) 수령증 첨부
견적서	물품 구입/간병비의 경우, 견적서 첨부
소견서, 진단서	의료비의 경우, 첨부
각종 확인서	지원금 사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증
물품 구입에 따른, 물품 사진	물품 구입 시, 물품 사진 첨부
개보수에 따른, 비교 사진	개보수 등의 경우, 전/후 사진 첨부
주거비 납부 확인증	미납된 주거비 지원 시 납후 확인 증
임대차계약서	주거 이전 시 임대차 계약서
비교견적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비교견적서 결과보고서 첨부

4) 제출 방법 :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결과보고를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 (한글파일, 스캔파일, 사진자료)